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3. 23.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2년 3월 10일

나. 발의자: 오현숙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8일

라. 상정일자: 제23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2022. 3. 21.)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오현숙 의원)

가. 제안이유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참여 보장을 통한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제고하여 주민 자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외국인 주민 증가 및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추세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확대(안 제7조)
-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통한 위원 및 예비후보자의 선정으로 개방성,

대표성, 다양성, 공정성 추구(안 제8조~제8조의2)

- 간사를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간사 자격의 범위를 넓혀 동별로 탄력적 운영(안 제16조)
- 분과위원회 활동에 일반주민이 참여 가능토록 기회 부여(안 제17조)
-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주민자치회 운용에 탄력성 부여(안 제18조)
-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삭제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안건은 주민자치회 확대 운영에 앞서 시범 실시 중 발생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우리 구 주민자치회 여건을 반영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고자 발의된 개정 조례안임.

○ 주요내용은

- 안 제7조는 외국인 주민 증가 및 선거권 연령 하향 등의 추세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을 확대하고자 하는 조항임.
 -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요건을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에서 만 18세 이상으로 변경.
 -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 대장에 등록된 자에 대해 주민자치회 위원의 자격사항으로 추가됨.
- 안 제8조에서 제8조의2는 공개모집 및 공개추첨을 통한 위원 및 예비후보자의 선정으로 개방성, 대표성, 다양성, 공정성을 추구한 조항이며 안 제8조제1항이 변경됨에 따라 부칙 제2조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기간까지 효력이 있다’는 규정을 삭제함.
- 안 제16조는 간사의 선임 및 운영 등에 어려움이 발생함에 따라 간사를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간사 자격의 범위를 넓혀 동별로 탄력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함.
- 안 제17조에서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 것을 일반주민이 참여가능하도록 하여 직접 주민이 자치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함.

- 안 제18조는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주민자치회 운영에 탄력성·자율성을 부여하고 촉박한 사업일정 및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부담을 개선하고자 함.

-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및 서울시 표준 조례 개정안을 근거로 우리 구의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추진경험과 주민자치 운영 여건을 조례에 반영하였으며, 주민자치회의 다양한 주민의 참여보장과 운영의 자율성 및 투명성 확보로 자치역량을 강화하고 자치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견고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오현숙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469
----------	-----

발의년월일: 2022년 3월 일

발의자: 오현숙 의원 외 3명

1. 제안이유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운영 중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여 다양한 참여보장을 통한 대표성·비례성을 강화하고 역량을 제고하여 주민자치회의 위상을 높이고 지역의 자율성을 존중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외국인 주민 증가 및 선거권 연령 하향 등 추세에 따른 주민자치회 위원 자격 확대(안 제7조)
- 나. 공개모집 및 공개 추첨을 통한 위원 및 예비후보자의 선정으로 개방성, 대표성, 다양성, 공정성 추구
(안 제8조~제8조의2)
- 다. 간사를 선출직으로 전환하고 간사 자격의 범위를 넓혀 동별로 탄력적 운영(안 제16조)

라. 분과위원회 활동에 일반주민이 참여 가능토록 기회 부여
(안 제17조)

마. 정기회의, 분과회의 등 주민자치회 운용에 탄력성 부여
(안 제18조)

바. 부칙 제2조 유효기간 삭제

3. 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나. 예산조치 :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2022. 3. 8. ~ 3. 14.) 결과: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 중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를 ““주민자치회”란”으로, “수행하는”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 단위로 설치하는”으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를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제1항 중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방법 결정

과 과정관리를”을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단체 추천자”를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를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로, “각각”을 “두며,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 중에서 각각”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19세”를 “18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이수”를 “주민자치학교 이수”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제7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과”를 “다음 각 호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선정할”을 “선정될”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제5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제8조의 제목 “(위원의 위촉)”을 “(위원의 선정)”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본문 중 “위원은”을 “주민자치회 위원은”으로,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원의 10분의 5를 추첨으로 우선 선정하고,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원의 10분의 5를 선정한다”를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추첨을 통해 선정한다”로 한다.

제8조제1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다만,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제8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종전의 제7항) 중 “주민자치회 위원”을 “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을 삭제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예비 후보자의 선정) ①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위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제외한 6명이하의 예비 후보자를 둔다.

② 예비 후보자는 공개추첨으로 순위를 정한다.

제8조의3(위원의 위촉 등) ① 동장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위원 및 예비 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위원 선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제1항의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정된 위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 동장은 위촉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의4(결원에 따른 충원)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아니한다.

1. 예비 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 후보자 순위대로 위촉

2. 예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

제9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에는 공개추첨 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연임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학교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제11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제3호”를 “제4호”로, “제4호 및 제5호”를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호(중전의 제3호) 중 “중립 의무”를 “중립의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를 “제1항제5호 또는 제6호”로 한다.

3. 임기 중 제7조제3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4조의 제목 “(주민자치회의 장)”을 “(자치회장 임무 등)”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를 “주민자치회는 간사를 두어”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 중 “자치회장은”을 “주민자치회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제7조 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④ 주민자치회는 간사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간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한다.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로 구분하며 다음”을 “다음”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주민자치회”를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주민자치회 회의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나. 임시회:

- 1)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2. 분과위원회 회의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나. 임시회: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분과위원장 회의: 월 1회 이상.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⑤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회의 안건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⑦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 구의원은 지역주민의 대표로서 관련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제19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회의록”을 “회의에 관하여 회의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에 따라 개최 횟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제24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구청장은 온라인 참여 조성 등 주민의 참여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제29조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동에 두는 주민자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주민자치회”란 제1조의 목적 달성을 위해 동에 설치되고 주민을 대표하여 주민자치와 민관협력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제3조(설치)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관할 지역의 동에 주민자치회를 설치할 수 있다.</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민자치회를 설치하고 그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 ----- ----.</p> <p>1. “주민자치회”란 ----- ----- -----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동 단위로 설치하는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3조(설치) ①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의 각 ----- -----.</p>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정원) ① (생략)

② 제17조에 따른 분과위원회 위원은 정원 외로 추가 모집할 수 있다.

제6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동장은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한 추천방법 결정과 과정관리를 위하여 각 동에 주민자치회 위원선정관리위원회(이하 “위원선정관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동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1. (생략)
2. 관내 주요 기관 및 단체 추천자 2명 이내

③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위촉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각각 호선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명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동 주민자치회”라 한다.

제5조(정원) ① (현행과 같음)

<삭제>

제6조(위원선정관리위원회) ① ---
--- 위원 선정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

-----.

② -----

-----.

1. (현행과 같음)
2. -----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

③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 ----

두며,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

④ (생략)

제7조(위원의 자격) ① 위원은 모집 공고일 현재 만 19세 이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람 가운데 주민의 자치 소양 강화를 위하여 운영하는 교육(이하 “주민자치학교”라 한다)을 6시간 이상 이수한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이수의 효력은 2년으로 한다.

1. ~ 3. (생략)

<신설>

②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단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 1.·2.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위원으로 선정할 수 없다.

1. ~ 4. (생략)

5. 제12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법 위반 또는 직무를 태만히 하여 위원에서

중에서 각각 ---.

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자격) ① -----
----- 18세 -----

주민자치학교 이수-----.

1. ~ 3. (현행과 같음)

4.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동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등재된 자

② -----
----- 다음 각 호와 -----

- 1.·2. (현행과 같음)

③ -----
----- 선정될 -----

1. ~ 4. (현행과 같음)

5. ----- 제6호-----

해촉한 사람으로 해촉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신 설>

제8조(위원의 위촉) ① 위원은 공개모집에 신청하고 주민자치학교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 주민자치회 위원은 정원의 10분의 5를 추첨으로 우선 선정하고,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정원의 10분의 5를 선정한다. 다만,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선정된 위원 후보자를 제외한 6명 이하의 예비후보자 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동장은 제2항에 따라 선정한 위원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선정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의 위원 명부 접수 후 20일 이내에 위원을 위

6. 위원선정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위촉 중인 사람

제8조(위원의 선정) ① 주민자치회 위원은 -----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공개 추첨을 통해 선정한다. 다만, 위원의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삭 제>

<삭 제>

<삭 제>

촉하여야 한다.

⑤ 위원의 사임 또는 해촉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촉하지 않는다.

1. 예비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후보 순서대로 위촉

2. 예비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정 후 위촉

⑥ 동장은 위촉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부터 1개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⑦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기준 및 추천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선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⑧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동 구의원은 지역 주민의 대표로서 관련 회의 및 행사에 참여하되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다.

<신 설>

<삭 제>

<삭 제>

② 위원의 -----

-----.

<삭 제>

제8조의2(예비 후보자의 선정) ①

<신 설>

위원선정관리위원회는 위원의
결원 등에 대비하여 제8조제1항
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제외한
6명이하의 예비 후보자를 둔다.
② 예비 후보자는 공개추첨으로
순위를 정한다.

제8조의3(위원의 위촉 등) ① 동
장은 제8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선정된 위원 및 예비 후보자의
명부를 작성하여 위원 선정일로
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제1항의 명부를 접수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선정된 위
원을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
다.

③ 동장은 위촉한 위원의 주요
인적사항을 위촉일로부터 1개
월 이내에 공고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의4(결원에 따른 충원) 위원
의 결원이 발생한 경우 구청장
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원을
위촉한다. 다만, 전임자의 남은
임기가 6개월 미만일 때에는 위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생략)

② 기존 위원이 임기 만료 후 재신청 시에는 신규 위원 위촉 방법과 같다.

③ 위원이 주민자치회의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회 안건의 이해관계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주민자치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주민자치회는 이를 결정한다.

제11조(위원의 의무) ①·② (생

촉하지 아니한다.

1. 예비 후보자가 있는 경우: 예비 후보자 순위대로 위촉

2. 예비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8조 및 제8조의3에 따라 위원을 선정하여 위촉

제9조(위원의 임기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연임 시에는 공개추첨 없이 임기만료 3개월 전에 연임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자치학교 또는 사전에 구청장이 인정한 보수교육을 임기 중에 6시간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삭 제>

제11조(위원의 의무) ①·② (현

략)

<신 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
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해당 사
유가 발생한 날 해촉한 것으로
보며,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는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2. (생략)

<신 설>

3.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
반한 경우

4. 5. (생략)

② 위원에게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또는 주

행과 같음)

③ 위원의 주민자치회 활동은
공익 실현의 목적에 적합하여야
하며, 사익을 추구하여서는 아
니 된다.

제12조(위원의 해촉) ① -----

-----.

제4호

--- 제5호 및 제6호-----

1. 2. (현행과 같음)

3. 임기 중 제7조제3항제1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4. -----

----- 중립의무-----

5. 6. (현행 제4호 및 제5호와
같음)

② ----- 제1항제5호 또는 제
6호-----

민 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 자치회장에게 해당 위원의 해촉을 발의할 수 있고, 자치회장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구청장에게 해촉을 요구할 수 있다.

제14조(주민자치회의 장) ① ~ ④ (생략)

제16조(간사) ① 자치회장은 위원 중에서 간사 1명을 선임하여 주민자치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할 수 있다.

<신 설>

② 자치회장은 필요한 경우 자원봉사자를 두어 간사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③ 자치회장은 간사 및 자원봉사자에게 업무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

제14조(자치회장 임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제16조(간사) ① 주민자치회는 간사를 두어 -----
-----.

② 간사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되, 위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제7조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간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주민자치회는 -----
-----.

<삭 제>

④ 주민자치회는 간사에게 업무

제17조(분과위원회) ① (생략)

② 분과위원회는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④ (생략)

<신설>

제18조(회의) ① 회의는 주민자치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장 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운영한다.

1.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

량과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제28조의 동 운영세칙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으며, 간사를 보조하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분과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과 제7조 제1항 본문 외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참여를 희망하는 자로 구성한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그 밖의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주민자치회의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의) ① ----- 다음 -----

-----.

1. 주민자치회 회의

-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나. 임시회:

- 1) 자치회장 또는 동장이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2.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월 1회
개최하며, 분과위원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
시로 개최할 수 있다.

3. 분과위원장 회의는 자치회장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동
장의 요구가 있을 때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주민자치회의 회의는 재적위
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

④ (생략)

<신설>

<신설>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재적위원의 3분의 1 이
상이 요구하는 경우

2. 분과위원회 회의

가. 정기회: 월 1회. 다만, 주
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
최할 수 있다.

나. 임시회: 분과위원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3. 분과위원장 회의: 월 1회 이
상. 다만, 주민자치회 의결로
격월 개최할 수 있다.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④ (현행과 같음)

⑤ 위원은 주민자치회 회의 안
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를 회
피하여야 한다.

⑥ 주민자치회 회의 안건의 이
해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결
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력하여야 한다.